

{}물품 공급 계약서

대한민국 <u>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4-1</u> 소재인 <u>신일가스</u>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 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번지 소재인 (주) 원익 아이피에스 (이하 '을'이라 칭함) 은 2012년 <u>11</u>월 <u>19</u>일 ("계약발효일")부로 다음과 같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대등 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2조 소정의 물품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을'이 납품하는 물품공급 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물품의 내역)

'을'은 '갑'에게 '을'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물품(이하 "대상물품")을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이를 매수하도록 한다. 단, 본 규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별 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다.

품목: 고압Purifier & 충전시설공사

수량: 5EA (Ar,He,O2,H2,N2) & Mix Gas Filling System

금액: [₩ 593,000,000]원

제3조 (매매대금)

- 1. 본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총 금 [₩593,000,000]원으로 한다.
- ② '갑'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개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매매대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이행증권 제출)
- 2. 중도금 : '을'이 대상물품을 '갑'에게 납기기한 내에 납품하고 제5조 소정의 검사 절차를 완료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50]%를 [6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 3. 잔금: '을'이 납기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제5조 소정의 검사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20]%를 [6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하자이행증권 제출)

제4조 (납품)

1.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물품을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갑'과 협의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납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0. 7 50





수 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변경 납기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을'은 제 1 항의 납기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납기준수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납기 지연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납기지연 시작일로부터 대상물품에 대한 최종 검수 완료일까지 지체일수 1 일당 발주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된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과 합의한 납품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및 기타 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는 '갑'의 긴급 요청에 따른 납품 시에도 동일하나 긴급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4. '갑'은 '을' 장비의 가격, 품질, 납기준수 및 기타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을'이 대상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제5조 (검사)

- ① '을'은 매도한 대상물품에 대하여 그 납품 이후 '갑'으로부터 대상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등정상가동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대상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소정의 납품확인서류를 교부 받아야 한다.
 - 5. '을'이 매도한 대상물품이 제 1 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을'은 즉시 대상물품의 수리 또는 교체 등 '갑'이 안정함을 있는 조계를 취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재검사로 인한 납기의 연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제6조 (보증사항)

- ① '을'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의 각 사항을 '갑'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증한다.
- 1. '을'은 대상물품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대상물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이나 질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상물품을 '갑'에게 매도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의 제약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
- 2.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본 계약에 의해 의도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을'이 본 계약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본 계약은 '을'에 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3.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물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중재 등이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위험성도 없다.
- ② '갑'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의 각 사항을 '을'에게 진술하고 보증한다.
- 1. '갑'은 '을'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적법한 사업자로써 법률상 사실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과의 거래를 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갑'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을'과의 거래를 해할 경우 '갑'은 '을'의 피해 일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일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일까지 '을'과 합의한 대금 지급 규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실히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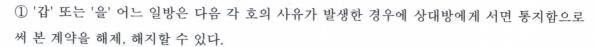
제7조 (품질 및 특허 보증)

-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약정된 품질보증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의 하자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한다.
- ②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물품에 관련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없어야 하며, 만약 '을'이 제공한 물품을 사용 중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8조 (하자보증)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한 물품에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하자발생의 원인이 '갑'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갑'이 하자보수에 따른 실비를 정산하도록 한다. '을'의 '갑'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대상물품의 인도 완료일로부터[1]년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해지)



40 W W W W

- 1.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였을 경우,
- 3. 상대방이 감독관청 또는 정부로부터 영업의 취소, 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 4. 상대방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의 신청,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중단 하는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 기타 권리구제의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이전 및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의무 양도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발생 시 귀책당사자는 양수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관계 법령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부수 협정 기타 관련 문서의 해석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제반 법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단,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 양 당사자 모두가 기명 불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계약내용의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과 '을'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내용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 관한다.

2012년 11월 19일

계약자 (갑): 신일가스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丁月27日

계약자 (을):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대표자 성명: 이 문 용하

料